

# 受託研究事業 運營 規程

2004年 12月 20日 第2回 定期總會 制定

**第 1 條 (目的)** 이 規程은 學會가 受託받은 研究事業의 運營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程함을 目的으로 한다.

**第 2 條 (受託研究事業의 種類)**

1. 政府 또는 政府投資機關으로부터 受託받은 研究事業
2. 個人 또는 法人으로부터 受託받은 研究事業
3. 其他

**第 3 條 (受託研究事業委員會의 運營)** 受託研究事業의 運營은 理事會에서 該當 研究事業의 責任者를 任命하여 수행한다.

**第 4 條 (受託研究事業의 遂行方法)** 受託研究事業은 遂行人員의 構成 및 研究事業費를 算定하여 理事會의 決議로 研究事業을 施行한다.

**第 5 條 (受託研究事業費의 算定)**

1. 受託受注金額의 算定은 理事會에서 한다.
2. 實行金額은 受注金額의 90%以下로 하고 나머지金額은 學會 寄與金으로 한다.

附 則

1. 本 規程은 2004年 12月 20日부터 施行한다.